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관세청은 2009년부터 발굴한 FTA활용 사례들에서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하여 수출증대로 연결한 사례 등 유의미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간하였으며, 이번호부터는 동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FTA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별로 활용사례도 같이 수록하였다.



01

국내가공 FTA 특혜 활용 모델 (한-중 FTA)

개 요

-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하여, 우리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후 한-중 FTA 특혜 적용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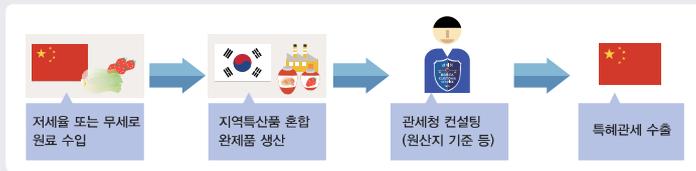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

-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만, 가공식품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
- FTA 체결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기초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함으로써 원재료비 절감, 고품질 유지 및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

한-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FTA특혜 활용가능

※ (적용가능품목) 김치, 조제 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품, 믹스커피, 잼 등

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한-중 FTA)



활용 및 확산분야

-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식품가공기업 등
- 한-중 FTA

02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개요

- 기존에 역외산에 의존하던 주요 부품을 국내조달(원산지확인서 징구) 하거나 직접 생산하여 역내산 재료로 전환하는 모델
- 원재료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비즈니스 모델

- 완성품을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가 역외산 재료인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예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완성품의 HS코드와 동일한 역외산 재료 사용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완성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역외산 재료 사용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



- (유의사항)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이 국내조달에 따른 생산비 상승보다 더 큰지 확인하고, 부품 구매선 전환 효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함

활용 및 확산분야

- 협력사에서 원산지 확인서류 수취가 곤란한 기업

역외산 재료의 국내산 전환 모델_활용사례 1 원산지확인서 수령으로 FTA특혜세율 적용

기업 및 제품소개

- 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업체로 무산소 동판, 관, 봉 등을 제조하는 업체임
- 주요 수출 품목 : 무산소 동판, 관, 봉(HS 7409, 7411 등)

FTA 활용전 상황

- 국내거래업체로부터 Brass Tube, Brass Rod 등을 공급받아 필요한 형태, 크기로 가공하여 수출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같아 C/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어 FTA 혜택 없음

장애 요인

- 공급받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
-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FTA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납품업체의 무지 및 비협조로 어려움

극복 방법

-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지만 국내 업체로부터 한국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충족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품업체의 원산지증빙서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므로 세관 컨설팅을 토대로 원산지확인방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교육하고 설득함으로써 증빙서류 확보

FTA활용 효과

- 한·미 FTA 적용시 약 1.4 ~ 3% 관세 혜택 및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가능(발효 전 75천불 → 89천불로 14% 증가)
- FTA 관세 혜택시 원가 절감으로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 예상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역외산 재료의 국내전환 모델_활용사례 2 무한경쟁시대에 FTA 신형엔진 장착

기업 및 제품소개

- J사는 세계 4위의 방송용 HD 모니터 제조업체로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KBS, MBC, SBS 등 국내지상파는 물론 BBC, NBC, HBO 등 굴지의 해외방송국에도 공급하고 있음

FTA 활용전 상황

- '08년부터 지속된 세계 경기의 동반침체는 방송국의 광고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축소로 이어져 미주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방송장비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상황

장애 요인

- 주요 원재료가 수입 물품으로 부가가치기준 충족이 불가능
- 동 업체는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없고, 관련 담당자조차도 FTA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극복 방법

주요 원재료 국내산으로 대체

- 방송용 모니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CD 패널이 한국산이어야 하므로, 기존에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던 구매선을 국내로 전환

원재료명	비고
LCD 패널	모니터의 영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품
전자부품	IC 종류 포함
기구자재	각종 부품을 고정하고 모양을 갖추게 함

FTA활용 효과

<정량적 효과>

- (미국 수출증가) FTA 체결국 중 미국 수출금액이 발효 전 4,443천달러에서 4,962천달러로 11% 증가됨에 따라 세관의 1:1 맞춤 컨설팅, 전화상담 등의 FTA 활용지원 대책이 결실을 거두는 것으로 분석
- (EU 수출증가) EU 수출금액 또한 발효 전 8,629천불에서 11,162천불로 무려 29% 증가하였으며, 이는 EU 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상황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인 것으로 판단

기간	EU 수출금액(천불)	미국 수출금액(천불)
발효 전	4,443	8,629
발효 후	4,962	11,162

- (가격 경쟁력 확보) 세계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SONY, JVC, Panasonic 등 메이저급 외에도 동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인 Mashall(미국), HD2Line(독일), Vutrix(영국) 등 20여개사가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완전경쟁형태의 시장



- '08년부터 '12년까지 세계 디지털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연평균 약 9.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연간 약 15%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한-EU 및 한·미 FTA 활용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시사점

-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고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03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활용 모델

개요

- 원재료 중 일정비율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원산지관리를 간소화한 모델
 -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간과하기 쉬운 '미소기준'을 적용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수출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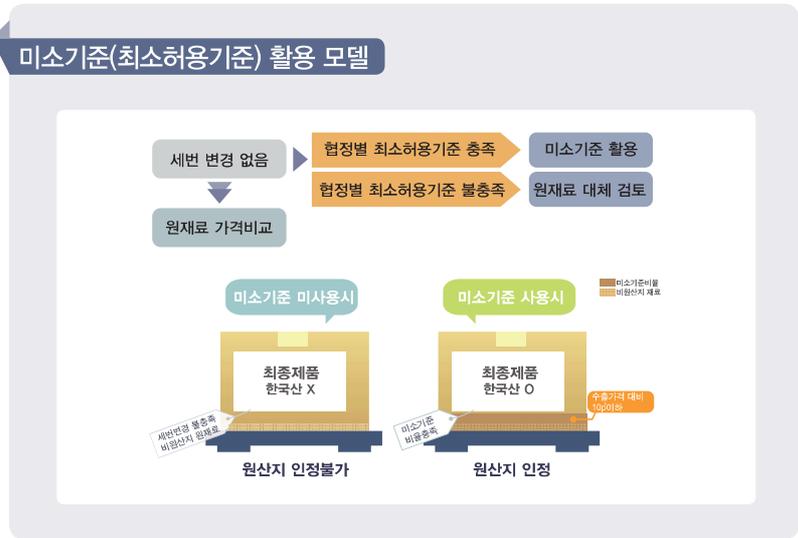
미소기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요건(PSR)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비즈니스 모델

-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업화되어 모든 원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세번변경기준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협정에서 규정한 미소기준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FTA 활용혜택 수혜 기업의 확대 필요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여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관리의 유연성 발휘
 - 원재료 종류가 많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가격이 미미한 원재료에 미소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 창출



※ 유의사항 BOM의 품목별 세번번호와 단가를 확인하고 FOB 또는 EXW에 대한 미소기준을 반드시 확인 필요.

■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구분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미국	EU/터키	페루
가격 기준	일반	8%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14류 적용제외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중량 기준	섬유	8%	8%	7%	10%	7%	8~30% 일부 가격 기준	10%



활용 및 확산분야

- 모든 산업분야 및 FTA

미소기준 활용 모델_활용사례 3

미국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한 의류 전문 업체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남성용 셔츠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업체임

FTA 활용전 상황

- A사는 와이셔츠, 티셔츠 등 섬유제품 품질에 대한 까다로운 미국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품질의 우수성 필요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에 있어 국내산 재봉사를 사용해야하는 예외 조건으로 인해 수출품의 원산지를 충족하기 어려움
- 미소기준 역외산 재봉사에 대한 미소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원산지결정 기준	미소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401호 제외)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 7%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소요부품명세(BOM)

품명(재료명)	세번번호(HS)	원산지	공급자
원단(100% cotton)	5205.47	KR	○○방직
심지(Interlining)	6217.10	미상	○○사
재봉사(Sewing Thread)	5401.10	미상	○○상사
어깨테이프(Should Tape)	6217.90	KR	○○상사
·	·	·	·
·	·	·	·

극복 방안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
- 비원산지원재료인 재봉사의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충족함을 확인 함

■ 미소기준 산출 내역

구 분	무게(g)	전체무게(g)	미소기준 산출
어깨테이프	0.49	244.3	$5.58/244.3 \times 100 = 2.28(\%)$
재봉사	5.58		
·	·		

- 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FTA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세관의 FTA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 참여 등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
- FTA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전담직원이 세관, 무역협회 등 전문 기관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적극 참여

활용 효과

- 우수한 품질과 한·미 FTA 관세인하로 전년대비 對美 수출 67% 증가



시사점

- FTA를 활용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전문기관의 컨설팅, 교육 참석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FTA 활용에 성공한 사례임

미소기준 활용 모델_활용사례 4 미소기준 적용으로 한-미 FTA 활용

기업 및 제품소개

- B사는 스피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음
- 제품소개

품명	HS번호	원산지결정기준(한·미 FTA)	관세혜택
스피커	8518,29	4단위 세번변경 (CTH) 또는 제8518,90호로부터의 변경 (단,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45% 이상 역내부가가치 발생한 것)	4,9% ▶ 0%

FTA 활용과정

FTA 활용시 장애요인

- 한·미 FTA를 對美 수출확대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FTA 협정을 이해하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음

활용과정(극복과정)

- HS4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조정가격의 10% 이내인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없이 자체적으로 FTA 활용 결정

■ 수출물품 원재료 명세서 (BOM)

부 품	HS코드	부품의 부가가치 비중(%)			비 고
		제품A	제품B	제품C	
FRAME	7209	※ 세번변경 기준 불충족 원재료의 부가가치 비중 모두 10% 미만으로 미소기준 충족			4단위 세번변경
CENTER POLE	7209				
TERMINAL	8518	1.45	1.15	1.21	미소기준 적용
-	-	기재생략			4단위 세번변경

활용 효과

- FTA 관세혜택으로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0% 수출증대 효과를 거둠
- 세번변경기준의 완화규정인 '미소기준'을 물품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원산지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비용 절감

시사점

-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각 원재료별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미소기준 등 보완 규정 적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정 역내부가가치조건 충족 시 베트남 등 FTA 체결국 현지공장에서 반제품을 무관세 수입 후 가공수출 형태의 국제분업 가능

